

「社會科學研究」 투고규정 · 편집규정 · 심사규정

2002. 10. 1 제정
2006. 8. 1 개정
2007. 7. 1 개정
2010. 3. 1 개정
2012. 12. 1 개정
2015. 3. 1 개정
2017. 6. 1 개정
2018. 8. 1 개정
2020. 1. 2 개정

社會科學研究 심사규정

가. 심사위원 선정

1. 「사회과학연구」(이하 본 학술지라 칭함)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의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원고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모든 제출원고에 대하여 한 편당 2인으로 하되 제3심사위원이 위촉될 수 있고, 이 경우를 포함하여 논문 1편당 최대 3인으로 한다. 이 때 원고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공분야의 편집위원이 논문의 주제와 내용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편집위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심사절차

1.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주제의 적절성, 연구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구성·집필의 적절성, 논문 전개의 명료성, 활용자료의 충실도, 학술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논문을 심사하고 종합적인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논문 심사결과 통보서' 양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판정>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논문 심사 의견서 양식

논문심사의견서

※ 아래 안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심사위원 성명			
소 속		생년월일	
주 소			
e-mail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핸드폰)			

논문제목	
------	--

〈심사평가〉

	점 수	10	9	8	7	6	5	4	3	2	1
항 목											
주저의 적결성											
연구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구성·집필의 적결성											
논문 전개의 명료성											
활용자료의 충실도											
학술적 가치											

〈판 점〉

게재 가	수경 후 게재	수경 후 재심	게재 불가
70이하	62-56	55-49	42이하

- 1) 게재 가 :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2) 수정 후 게재 :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수정 후 재심 : 내용의 전반적인 보완 및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보완 및 수정 후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게재 불가 : 게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거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심사위원은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소견 및 판정내용과 ‘수정사항’ 또는 ‘게재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게재여부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6. 편집위원회의 의결 후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출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한편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에는 초심에서 ‘게재 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바꾸지 아니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7. 재심사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 초심의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 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최종 확정한다.
8.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이 이루어져야 게재할 수 있다.
9.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심사위원이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 한 사유가 명시된 심사의견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재투고된 논문은 신규논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 수정지시

1. 논문의 원고작성 형식이 본 학술지에 맞지 않거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한다.
2. 수정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본 학술지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라.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2002. 10. 1)

마.

바.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2006. 8. 1)

사.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2007. 7. 1)

아.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0. 3. 1)

자.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5. 3. 1)

차.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7. 6. 1)

카.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8. 8. 1)